

공인(公人)의 개념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

하 사 랑

김 범 준[†]

김 민 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공인의 분류기준 및 범위와 공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를 살펴보았다. 실험 1에서는 공인의 정의와 공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 또는 자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인의 정의는 ‘인지도를 갖춘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 또는 자격은 청렴함, 정직함, 도덕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인의 기준 속성을 선정하고 각각의 속성에 대해 현재 공인이 갖고 있는 정도와 가져야 한다고 기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인지도와 외모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현재와 기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청렴함, 도덕성, 규범준수의 차이가 컸으며, 경제력, 사회적 지위, 영향력은 현재보다 앞으로 더 적게 가져야 된다고 평가되었다. 실험 3은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고위공무원군을 포함한 공무원군이 상대적으로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았으며, 연예인군 또한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험 4에서는 공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비난, 자숙에서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과 일반인과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인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와 처벌, 비난, 자숙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주요어 : 공인(公人), 공인의 위법행위, 처벌판단, 비난, 용서

* “이 논문(저서)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312)”.

본 논문은 하사랑의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김범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Tel: 031-249-9193, E-mail: bjkim@kyonggi.ac.kr

2011년 9월 9일 프로 씨름선수로 천하장사까지 지내다가 연예인으로 변신, 유명 MC로 맹활약하던 강호동이 거액 탈세 혐의를 받고 결국 잠정적으로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한국경제, 2011. 9. 23). 상당수 네티즌들이 “솔직히 이제 텔레비전에서 강호동씨를 본다면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공인이면 처신을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내며 퇴출운동에 동참했다(뉴스엔, 2011. 9. 9). 이와는 반대로 진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강호동씨가 탈세로 비판을 받다 은퇴 선언까지 했지만 다른 분야의 탈세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국경제, 2011. 9. 23).

강호동 사건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호동은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예인 활동을 중지하였다. 일반인이라면 사회적 주목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부과되는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공인은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활동을 재개하기도 한다. 자숙기간을 가진 후에 활동을 시작하면 이에 대한 비난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용서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용서의 기준이 공인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인 여부가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처벌 판단 및 용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인이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인 여부라는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인의 언행은 대중의 관심대상으로,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해 공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

용에서부터 사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된다. 이렇게 형성된 공인에 대한 인식 내지 선입견은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범죄사건에 있어서 언론보도를 통해 제공되는 피고인의 정보가 배심원의 평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Stebly, Besirevic, Fulero, & Jimenez-Lorente, 1999; Studebaker & Penrod, 2005).

공인 여부가 처벌판단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인의 개념 및 범위와 공인 집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인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것은 1980년대 말로 추정되고 있다(임유진, 1998). 그 이전에는 공인이라고 통칭되기보다는 공직자, 유명인, 연예인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공인이라는 말은 주로 언론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이후 법적 소송에서도 사용되었다(이재진, 1999). 명예훼손에 관한 기존 연구는 공무원, 정치인, 공직자의 친인척, 언론인, 교직원, 대학교수, 연예인, 성직자, 사회운동가, 기업가, 법조인 등을 공인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이재진 2003; 임유진, 1998; 차용범 2001, 2002). 공인의 분류와 개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학과 법학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공인의 개념, 분류기준 및 범위, 공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인의 개념과 범위 및 공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알아보고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공인 여부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인의 분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적 정의에 근거한다면, 공인에 해당되는 가장 적합한 직업

은 공무원이다. 그 외에도 연예인, 작가, 운동선수 등을 공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아시아경제, 2012. 4. 13; 엑스포츠뉴스, 2012. 7. 5).

공인의 분류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학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지위가 공인인지 여부에 따라 법리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공인의 분류는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은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인이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공인이론은 1964년 경찰서장 Sullivan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한 재판¹⁾을 시발점으로 하여 발달하였다. 이 판결에서 원고가 공인일 경우 피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²⁾을 수립하였다. 미연방법원은 Gertz 판결³⁾을 계기로 공인을 일반적 공인(all purpose public figures), 제한적 공인(limited purpose public figures), 비자발적 공인(involuntary public figures)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 공인은 사회 전반에 걸쳐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의 언행은 대중의 관심이 되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설득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한적 공인은 사인(私人)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대부분 해당되는 유형으로, 제한적 공인의 정의는 모호한 개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법원은 공적인 논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 논쟁의 전면에 스스로 등장하면 누구나 제한적 공인으로 본다(문재완, 2002). 즉, 제한적 공인의 판별 있어서 공적 논쟁의 존재 여부, 자발적 참여 여부 두 가지를 확인한다. 비자발적 공인은 자발적인 행동이 없어도 일반인이 공인이 되는 것으로, 범죄행위의 용의자라든가 유명

인의 부인, 정부, 애인 또는 공적관심사에 대한 논평가나 특정 사실의 연루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김동주, 2001). 이 세 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무원(public officials) 또한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⁴⁾. 보통 공적인 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적용되며, 퇴직한 공무원도 현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문재완, 2004).

한국에서는 공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공직자, 유명인, 명사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공인이라는 용어는 언론에 의해 먼저 사용되었는데, 미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같은 의미로 이를 사용하였다(이재진, 2004). 한국 언론은 공인의 범위를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매체를 이용한 각종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 대통령 후보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에서부터 유명 스포츠맨,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로 규정하여왔다(최지웅, 2003).

국내 법원에서 미국의 공인이론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명예훼손 법리 적용에 있어서 사인과 공인은 그 범위와 제한에 차이가 있음을 구분하였는데 “음주운전은 공공의 관심사항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⁵⁾.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직에 종사하여 그 활동이 일정지역 사회나 국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있어 그 활동 상황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1)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2)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진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피고의 발표내용이 허위라는 것 및 피고가 그 내용의 허위를 알았다거나 무분별하게 이를 무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3) Gertz v. Welch 418 U.S. 323(1974).

4) Hutchison v. Proxmire, 443 U.S. 111(1979).

5)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서울고법 1998. 4. 16. 선고 97나47141 판결.

것”이라고 제시하였다⁶⁾.

국내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법리 적용에 있어서 공인 이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공인의 개념 사용이라는 문제점은 인식하되 정작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거나 원칙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윤성옥, 2007).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공인에 대한 일부 개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인개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한국 법원과 언론 내지 사회 일반의 공인관련 인식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최지웅, 2003).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인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명예훼손 법리 적용에 있어서도 공인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명예훼손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공인은 언론학계와 법원의 입장으로 이는 최지웅(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인의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에 관한 연구

공인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사회가 공인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 등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을 사회의 특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특수집단 범죄는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or crime)라는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Sutherland(1983)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진 자들이 의욕적 동기에서 자신의 직업, 신분, 지위를 활용하여 행하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전통적으로 범죄학 연구는 하위계층에서 저질러지는 절도, 강도, 상해, 강간, 살인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를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Sutherland(1940, 1945, 1983)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더 위험

한 범죄로 더 많은 죽음이나 상해,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이런 상위계층의 범죄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였다.

최승혁, 김범준 및 김시업(200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을 조사하였다. 고위기업간부의 사기, 횡령,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과 일반인의 강도, 절도에 관한 5가지 범죄 시나리오를 대학생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는 법정형이 더 큰 뇌물수수죄보다 사기죄와 횡령죄에 더 중형을 내렸으며,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같게 설정된 사기, 횡령, 강도에 대해서 강도보다 사기, 횡령에 더 큰 형량을 부과했다.

처벌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에 대한 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공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공인에 대한 처벌판단을 이해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범죄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보고해왔다(Esqueda, Espinoza, & Culhane, 2008; Freeman, 2006; Hoffman, 1981; Mazzella & Feingold, 1994; Osborne & Rappaport, 1985). Mazzella와 Feingold(1994)는 모의배심원이 처벌을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신체적 매력,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이 주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메타분석 하였다. 그 결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였다.

반면에 Esqueda, Espinoza, 및 Culhane(2008)의 연구에서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종, 범죄유형(횡령, 자동차, 절도)을 조작하여 2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의 참가자는 미국의 주류집단인 유럽계 미국인으로 자신들과 같은 유럽계 미국인 범

6) 서울지법 2000. 8. 23. 선고 99가합30768 판결.

죄자와 멕시코계 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 판단을 하였다. 그 결과,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멕시코계 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 다른 경우보다 범죄자를 비난하는 강도가 높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유죄 평결을 더 많이 하고 더 긴 형량을 부과하였으나 유럽계 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2에서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 1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연구 1과는 다르게 범죄자의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위, 범죄유형에 따른 처벌판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night, Giuliano, 및 Sanchez-Ross(2001)는 강간 범죄에 있어서 인종과 인지도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판단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인종은 흑인과 백인으로, 인지도는 유명인사(celebrity)와 일반인으로 조작하였다. 대학생 참가자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강간범죄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가해자의 직업에 주는 영향, 가해자가 유죄를 받을 확률, 유죄라면 부과되는 처벌의 크기 등을 묻는 8가지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가해자의 인종과 인지도는 참가자들의 강간범죄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인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흑인 일반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인식된 반면에 백인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백인 일반인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Wong, Goodboy, Murtagh, Hackney, 및 McCutcheon(2010)은 살인사건에 있어서 유명인사가 주는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다. 유명인사는 영화배우, TV스타로, 일반인은 회사원으로 조작하여 비교하였다. 대학생 참가자는 범죄자만 다르게 조작되고 그 외의 내용은 같은 세 개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처벌판단과 유명인사태도척도(Celebrity Attitude Scale)에 응답하였다. 이 척도는 유명인사에 대한 태도와 친밀감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유명인사에게 호의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점수를 보

인 참가자들은 낮은 점수를 보인 참가자들보다 유명인사의 범죄에 대해서 더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며, 영화배우에게 가장 낮은 유죄확률을 평정하였다. 그러나 유명인사태도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은 회사원보다 유명인사에 대해 더 높게 유죄라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영화배우에 대한 유죄판단이 가장 높아서 유명인사태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과 차이를 보였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연구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 연구, 유명인사에 대한 처벌 연구를 통해서 위법행위를 한 공인에 대한 처벌판단이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의 화이트칼라, 사회경제적 지위, 유명인사에 관한 연구들이 공인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일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이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에 한계를 갖는다.

종합하면, 공인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를 벗어나 더욱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는 법학 및 언론학의 입장으로 일반인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공인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자질 및 사회적 책임이 공인의 정의가 더욱 포괄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되는지 알아보지 않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처벌에 있어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사회경제적 지위, 유명인사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나 공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공인 분류 기준 및 공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공인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공인의 정의와 속성, 공인의 현재 속성과 기대 속성,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 공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는 4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 험 1

실험 1은 공인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인의 정의에 대해 조사하고 공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속성과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살펴보았다.

참가자

4년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85명(남성: 37명,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0.84세($SD=1.65$)이다.

조사내용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사용하여 공인의 정의 및 공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 또는 자격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공인의 정의

공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응답을 분류하여 범주화하고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았다(그림 1 참조). 29.85%의 참가자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등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공인을 정의하여 전체응답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않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공인으로 정의하는 응답이 높았다(26.87%). 인지도와 영향력은 전체 응답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응답들과는 10%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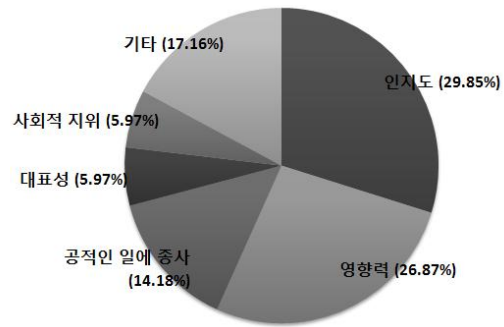


그림 1. 공인의 정의에 대한 응답 비율

공인의 사전적 정의인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14.18%), 앞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합친 결과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인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정의에 한정되지 않고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은 연예인을 포함하여 그 외의 사람들도 공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의 응답으로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5.97%),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5.97%)이 있었으며, 기타(17.16%)의 반응으로는 ‘사회를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 주는 사람’, ‘말과 행동이 신중한 사람’,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이 있었다.

공인의 속성

전체 응답을 분류 및 범주화하고 응답 비율과 순위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 중 청렴함이 1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직함(10.37%), 도덕성(8.71%), 예절(7.05%), 책임감(6.22%)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인에게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공인이 전문적인 속성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 험 2

실험 1에서 공인이 갖추어야 할 속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그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한계를 갖는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공인의 속성에 대해서 현재 공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앞으로 공인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공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공인에 대한 기대와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참가자

4년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08명(남성: 36명, 여성: 7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1.59세이다 ($SD=1.96$).

조사내용

현재 지각

실험 1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24개의 속성을 선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순위가 낮더라도 선정된 속성들과 성격이 달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속성들도 포함하였다. 이 24개의 기준 속성에 따라 공인을 평정하였다. 참가자는 각 속성을 현재 공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갖고 있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갖고 있다.’의 7점까지 제시된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기대 지각

공인이 24개의 기준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즉, 공인에 대한 기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는 각 속성에 대해 ‘전혀 갖지 않아도 된다.’의 1점부터 ‘매우 가져야 한다.’의 7점까지 제시된 7점 척도 상에서 평

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공인에 대한 현재 및 기대 지각

24개의 공인의 기준 속성에 대해 현재 공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앞으로 공인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표 1 참조). 현재 공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으로 영향력(5.98)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5.78), 경제력(5.70), 인지도(5.64) 등의 순이었다. 현재 지각 중 청렴함(2.87)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정직함(2.95), 기부(3.06) 순으로 평가가 낮았다. 이는 공인에게 기대하는 속성으로 책임감(6.47), 정직함(6.44), 모범성(6.39), 청렴함(6.37), 규범준수(6.27) 등 도덕적 자질이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현재 공인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인에 대한 현재 지각과 기대지각의 차이

공인에 대한 현재 지각과 기대 지각의 차이를 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도와 외모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현재와 기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에서 특히 청렴함($t(107)=17.76, p<.001$), 도덕성($t(107)=16.44, p<.001$), 규범준수($t(107)=16.09, p<.001$)의 차이가 컸는데, 이는 일반인이 기대하는 도덕적 자질에 공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2 참조).

대부분의 속성들이 현재보다 기대가 높게 평가되었으나, 경제력($t(107)=-6.98, p<.001$), 사회적 지위($t(107)=-2.95, p<.01$), 영향력($t(107)=-2.00, p<.05$)은 현재 갖고 있는 정도보다 앞으로 더 적게 가져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영향력은 실험 1에서 공인을 정의하는 속성으로 나타났으나

표 1. 공인에 대한 현재 지각과 기대 지각의 평균/표준편차 및 순위

속성	현재 지각 평균(SD)	기대 지각 평균(SD)	현재 순위	기대 순위
영향력	5.98(1.01)	5.77(1.16)	1	16
사회적 지위	5.78(1.07)	5.36(1.20)	2	19
경제력	5.70(1.57)	4.54(1.49)	3	23
인지도	5.64(1.14)	5.53(1.32)	4	18
대표성	5.53(1.39)	5.89(1.15)	5	13
전문성	4.90(1.55)	5.98(1.20)	6	11
화술	4.85(1.54)	5.20(1.22)	7	21
리더쉽	4.40(1.56)	5.80(1.13)	8	15
예절	3.88(1.39)	5.95(1.19)	9	12
사명감	3.86(1.50)	6.15(0.97)	10	7
교양	3.85(1.48)	5.59(1.20)	11	17
책임감	3.62(1.52)	6.47(1.06)	12	1
신중함	3.60(1.43)	6.00(1.19)	13	9
모범성	3.60(1.45)	6.39(0.83)	14	3
외모	3.60(1.70)	3.59(1.81)	15	24
친밀도	3.40(1.71)	5.01(1.42)	16	22
규범준수	3.38(1.48)	6.27(1.02)	17	5
공평성	3.34(1.36)	6.19(1.08)	18	6
중립성	3.33(1.17)	5.99(1.21)	19	10
도덕성	3.12(1.35)	6.13(1.09)	20	8
대중에 대한 봉사	3.08(1.36)	5.83(1.26)	21	14
기부	3.06(1.34)	5.23(1.57)	22	20
정직함	2.95(1.32)	6.44(0.98)	23	2
청렴함	2.87(1.36)	6.37(1.12)	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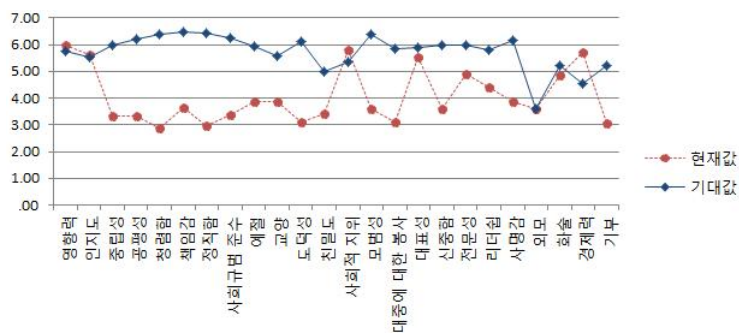


그림 2. 공인의 현재 지각과 기대 지각

낮아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공인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여 낮아져야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 험 3

실험 1, 2에서 공인의 정의와 공인에 대한 현재 지각 및 기대 지각을 알아보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공인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실험 3에서는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조사하여 공인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참가자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28명(남성: 65명, 여성: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3.38세이다($SD=2.91$).

조사내용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 5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50개의 각 직업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공인이 아니다.’의 0점부터 ‘매우 공인이다.’의 100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제시한 50개의 직업에 따른 평정 값을 분석하여 표로 나타내었다(표 2 참조). 그 결과, 대통령(94.84)이 가장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86.28), 장관(80.87), 외교관(80.23)

순이었으며, 정치인(80.08)은 6위였다. 대통령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더욱이 공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공인의 정의를 가장 잘 반영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0위 안에 있는 나머지 직업들 역시 큰 영향력이 있는 직업이며, 때때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정책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나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직업은 또한 정치인을 제외하면 모두 공적인 일에 포함된다. 정치인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하여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들은 공인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인지도와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다음으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13위, 70.09), 아나운서(14위, 68.69)도 상대적으로 높게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국가대표 운동감독(19위, 63.46)보다 운동선수가 더 공인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인지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과 같이 배우(16위, 64.83), 가수(18위, 64.01), 개그맨(22위, 62.55)도 상대적으로 높게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교사군의 경우 고등학교 교사(51.42)가 27위, 중학교 교사(50.09)가 30위, 초등학교 교사(48.28)가 33위, 유치원 교사(39.97)가 45위로, 같은 교사지만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 교사와는 큰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보다 더 공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는 유치원 교사보다 초·중·고 교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성직자는 기존 연구에서 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임유진, 1998; 차용범 2001, 2002; 이재진, 2003 등), 본 연구에서는 목사(42.02)가 40위, 신부(41.27)가 42위, 스님(39.55)이 46위로 나타나 제시한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낮았다. 성직자가 갖는 인지도

표 2.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의 순위 및 평균/표준편차

순위	직업	평균(SD)	순위	직업	평균(SD)	순위	직업	평균(SD)
1	대통령	94.84 (13.48)	18	가수	64.10 (25.50)	35	의사	45.50 (26.97)
2	국회의원	86.28 (19.26)	19	국가대표 운동감독	63.46 (25.97)	36	사회복지사	43.93 (25.74)
3	장관	80.87 (21.10)	20	기자	63.39 (24.55)	37	대기업임원	43.54 (27.79)
4	외교관	80.23 (21.58)	21	직업군인	63.27 (27.78)	38	음반제작자	43.33 (26.16)
5	판사	80.09 (21.24)	22	개그맨	62.55 (26.40)	39	쇼호스트	42.88 (27.54)
6	정치인	80.08 (24.09)	23	교수	60.65 (24.03)	40	목사	42.02 (30.37)
7	고위 공무원	78.13 (20.82)	24	변호사	60.17 (25.20)	41	운동감독	41.71 (27.77)
8	경찰간부	77.01 (21.09)	25	방송국PD	54.62 (24.14)	42	신부	41.27 (30.59)
9	검사	76.48 (21.35)	26	평론가	52.13 (25.41)	43	회계사	41.15 (26.22)
10	고위급 군인	73.03 (24.94)	27	고등학교 교사	51.42 (27.02)	44	시인	40.92 (28.00)
11	경찰	72.23 (22.83)	28	영화감독	51.24 (26.86)	45	유치원 교사	39.97 (24.83)
12	소방관	71.44 (25.87)	29	재벌총수	50.84 (31.54)	46	스님	39.55 (30.38)
13	국가대표 운동선수	70.09 (23.53)	30	중학교 교사	50.09 (26.68)	47	중소기업 임원	38.10 (27.03)
14	아나운서	68.69 (24.14)	31	운동선수	48.90 (28.12)	48	감정평가사	36.65 (26.84)
15	일반 공무원	66.12 (24.49)	32	방송국작가	48.46 (25.09)	49	파워블로거	31.88 (27.81)
16	배우	64.83 (25.55)	33	초등학교 교사	48.28 (26.95)	50	프로게이머	30.95 (27.21)
17	언론사 대표	64.39 (27.17)	34	소설작가	45.60 (28.19)			

와 영향력은 대부분 해당 종교의 종교인들에 한 해서이므로 일반인에게는 인지도와 영향력이 낮 게 인식될 수 있다.

실 험 4

실험 4는 공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인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실험 3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공인으로 평가되는 직업 과 공인으로 평가되지 않는 직업을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음주운전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 며, 이때 음주운전자의 직업을 다르게 조작하였 다. 각 시나리오를 읽고 참가자들에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가자

4년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 생 52명(남성: 19명,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3.42 세($SD=1.81$)이다.

시나리오

위법행위로 음주운전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 성하였다. 위법행위 중 음주운전은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배제하면서 공인과 일반인이 높은 빈도로 저지르는 위법행위이므로 본 연구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위법행위자는 실험 3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공인 으로 인식되는 직업 중에서 그 정도 순으로 정 치인, 공무원, 배우를 선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공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업으로 실험 3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프로그래머를 선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인과의 비교를 위해 회사

원을 선정하였다. 즉, 시나리오 상에서 위법행위 자를 정치인, 공무원, 배우, 프로그래머, 회사원 으로 조작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위법행위를 한 사람 의 직업을 조작한 부분이다.

(정치인)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경기도 안 양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 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 찰관에 적발됐습니다.⁷⁾

조사내용

비난

참가자는 주어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위법행 위를 한 사람의 행동이 어느 정도의 비난을 받 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비난받 지 않아도 된다.’의 1점부터 ‘매우 비난 받아야 한다.’의 7점까지 제시된 7점 척도 상에서 평정 하였다.

처벌

참가자는 주어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위법행 위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의 1점부터 ‘매우 처벌받아야 한다.’의 7점 까지 제시된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용서

본 연구에서 용서는 위법행위자에게 위법행위 전의 직업으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 하는 자숙 기간으로 조작하였다. 참가자는 주어 진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위법행위자가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자숙 기간을 개월 단위로 평정하였다.

7)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본 시나리오에서 제 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다.

공인

선정한 5개의 직업에 있어서 참가자가 공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와 그 순위가 실험 3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조작검증을 하기 위해 이 문항을 측정하였다. 참가자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위법행위자의 직업이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0~100으로 평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조작검증

시나리오에 제시한 5개의 직업이 잘 조작되었는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실험 3의 결과에 따르면, 정치인을 가장 공인이라고 인식하고 다음으로 공무원, 배우, 프로그래머, 일반인 순이다. 그러나 실험 4에서는 참가자가 공무원보다 배우를 더 공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의 정도를 측정한 실험 3에서 일반 공무원과 배우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실험 3과 4의 참가자들이 직업을 평가할 때 떠올린 구체적인 대상의 존재 여부와 이 대상들 간에 차이에 의해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4에서는 공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처벌 및 용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험 3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실험 4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 직업에 따른 공인 인식 정도(평균/표준편차)

직업	평균	SD
정치인	88.19	17.77
공무원	63.42	28.54
배우	75.54	28.95
프로그래머	37.19	23.24
회사원	12.04	14.44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비난에 미치는 효과

먼저, 직업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직업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48)=10.50, p<.001$. 각 직업에 따른 비난 정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ukey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의 평균이 6.13(1.10), 회사원의 비난의 평균이 5.10(1.50)으로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 회사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래머에 대한 비난의 평균은 5.40(1.23)으로,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 프로그래머에 대한 비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배우와 회사원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에 대한 비난의 평균은 5.81(1.16)으로 회사원에 대한 비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공인의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직업들 간의 비난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직업에 대해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비난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39였다($p<.001$). 즉, 참가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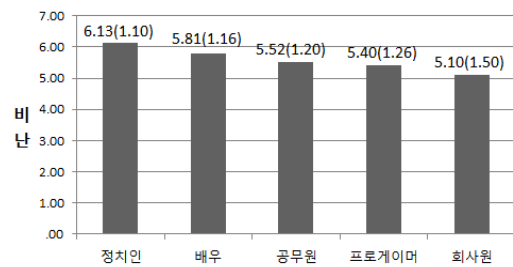


그림 3. 직업에 따른 비난 정도

위법행위자의 직업을 공인이라고 인식할수록 더 강한 비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용서에 미치는 효과

직업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직업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48)=6.27, p<.001$. 각 직업에 따른 처벌 정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ukey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평균이 6.35(0.81), 회사원의 처벌의 평균이 5.65(1.17)로 정치인에 대한 처벌이 회사원의 처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는 가장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치인과 일반인으로 인식되는 회사원 간의 차이로, 공인의 여부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직업들 간의 처벌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용서는 자숙 기간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직업이 위법행위에 대한 용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에 따른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직업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자숙 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48)=14.62, p<.001$. 각 직업에 따른 자숙 기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ukey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자숙 기간의 평균이 19.43(20.39)개월, 회사원에게 요구하는 자숙 기간의 평균이 2.79(3.39)개월로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자숙 기간이 회사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과 프로그래머($M=7.32, SD=7.55$), 정치인과 공무원($M=8.75, SD=10.12$)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자숙 기간이 프로그래머와 공무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배우와 회사원의 차이도 나타났다. 배우에게 요구하는 자숙 기간의 평균은 13.10(11.02)개월로 회사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인의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위법행위 시에 요구하는 자숙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직업들 간의 자숙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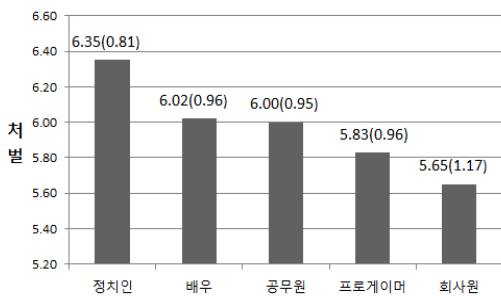


그림 4. 직업에 따른 처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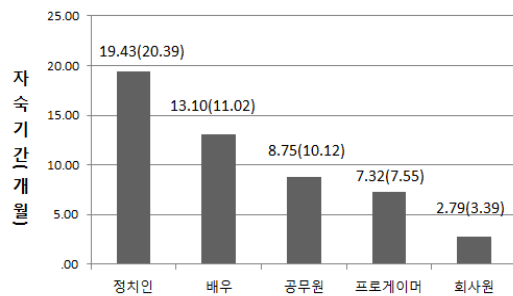


그림 5. 직업에 따른 자숙기간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5 참조).

공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직업에 대해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요구하는 자숙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47이었다($p < .001$). 즉, 참가자들은 위법행위자의 직업을 공인이라고 인식할수록 더 긴 자숙 기간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인에게 보다 엄격한 용서의 기준이 적용됨을 시사한다.

전체 논의

공인의 위법행위는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들어 거센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인에 대한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일반인의 처벌과 용서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사회에서 혼재되어 사용하는 공인의 정의와 인식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으므로 공인의 구체적 개념과 분류, 범위 및 속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먼저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인을 ‘인지도 및 영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이라는 용어가 사전적 정의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공무원 외에도 아나운서, 배우, 가수, 개그맨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기존 연구들(임유진, 1998; 차용범 2001, 2002; 이재진, 2003 등)은 성직자를 공인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언론학계 및 법원과 일반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에게 청렴함, 정직함 등과 같은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지만 현재 공인이 이와 같은 자질을 기대만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 처벌, 용서에서 공인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제시한 직업들 사이에서 공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강도 높은 비난과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보다 엄격한 용서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공인이 위법행위를 했을 시에 도덕적 비난과 용서에 그치지 않고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외적 요인에 의해서 공인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Shaw와 Skolnick(1996)의 연구에서 피고인의 직업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 지위가 낮은 피고인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Barnett과 Feild(1978)의 연구에서 경제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노력으로 성취한 것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으로 인해서 판결에 이점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Gleason & Harris, 1975), 실험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인이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Knight 등(2001), Wong 등(2010)의 연구에서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이 엄격한 처벌을 이끈 것과 일치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배우가 공무원보다 더 많은 비난과 엄격한 처벌,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 공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속성이 책임감, 정직함, 모범성, 청렴함, 규범준수 등 도덕적 자질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다 배우의 위법행위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성보다 이를 포함한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비난, 처벌, 용서에 있어서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먼저, 공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심리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공인에 관한 연구

결과로, 지속되고 있는 ‘공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 분야에 새로운 연구결과를 축적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현실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들이 공인에 해당하는가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좋은 준거를 제시해줄 수 있다. 나아가 배심제와 같이 일반인이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를 한 공인과 일반인에 대한 처벌과 용서의 차이를 살펴본 것은 재판 절차상에서 발생하는 배심원들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갖추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제안하겠다.

첫째, 대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에 제한점을 갖는다. 참가자의 연령과 직업에 따라 공인의 정의와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1의 결과로부터 공인은 인지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연령에 따라 영향력과 인지도를 가진 인물 및 직업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공인이라고 인식되는 직업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공인의 정의와 속성의 차이,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실험 3에서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50개의 직업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재평가하였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직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직업 자체로 인해 공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공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공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사회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일반인에게 공인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와 영향력의 정도를 조작하여 공인으로 인식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기 위해 공인의 위법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제한하였으나,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공인이 저지를 수 있는 특정 범죄를 조사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과 용서에 대한 판단을 연구할 수 있다.

다섯째, 공인을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용서하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공인의 도덕적 자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엄격한 처벌과 용서를 통해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 공인에 대한 기대가 처벌과 용서에 미치는 영향 등 심리적 기제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공인의 처벌과 용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인으로 인식되는 각 직업이 기준 속성을 갖고 있는 정도와 가져야 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에 따라 현재 속성의 정도와 기대하는 속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공인으로 인식되는 직업들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주 (2001).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소위 “공적인물” 개념의 우리 판례에의 반영. *民事法研究*, 9, 53-77.
- 뉴스엔 (2011. 9. 9). 강호동 은퇴 선언에 동정론 꿈틀 “죄질에 비해 응징 과해”.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9091847361001
- 문재완 (2002). 公인에 대한 名譽毀損. *法曹*,

- 8(551), 210-254.
- 문재완 (2004).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연구. *언론중재*, 24(1), 4-21.
- 아시아경제 (2012. 4. 13). 공지영 허위사실 유포...“성급했다” 빈축.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1215050463926&nr=Y>
- 엑스포츠뉴스 (2012. 7. 5). 두산 고창성 SNS, KIA-두산 갈등 불 지피기? http://x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241228
- 윤성욱 (2007).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 150-191.
- 이재진 (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 *언론과 사회*, 10(2), 73-110.
- 이재진 (2003). 방송에서의 ‘공인’의 의미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명예훼손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경제와 문화*, 1(1), 107-144.
- 이재진 (2004).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0(2), 73-110.
- 임유진 (1998).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공인에 대한 보도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차용범 (2001).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한국언론학보*, 45(2), 387-421.
- 차용범 (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3), 414-445.
- 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1997).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1-17.
- 최지웅 (2003). 명예훼손 판례분석을 통한 공인에 대한 개념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경제 (2011. 9. 23). 탈세 연예인 퇴출돼야 할까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2188061>
- Barnett, N. J., & Feild, H. S. (1978). Character of the defendant and length of sentence in rape and burglary crim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4, 271-277.
- Esqueda, C. W., Espinoza, R. K. E., & Culhane, S. E. (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SES, and crime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mock juro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2), 181-199.
- Freeman, N. J. (2006).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0), 2379-2394.
- Gleason, J. M., & Harris, V. A. (1975).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ceived similarity as determinants of judgements by simulated juro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175-180.
- Hoffman, E. (1981). Social class correlates or perceived offender typicality. *Psychological Reports*, 49, 347-350.
- Knight, J. L., Giuliano, T. A., & Sanchez-Ross, M. G. (2001). Famous or infamous? The influence of celebrity status and race on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 for rap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3(3), 183-190.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ments of mock jur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5), 1315-1344.
- Osborne, Y. H., & Rappaport, N. B. (1985). Sentencing severity with mock jurors: Predictive validity of three categori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3, 467-473.
- Shaw, J. I., & Skolnick, P. (1996). When is defendant status a shield or a liability? Clarification and extension. *Law and Human Behavior*, 20, 431-442.

- Stebly, N. M., Besirevic, J., Fulero S. M., & Jimenez-Lorente, B. (1999). The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on juror verdicts: A meta-analytic review. *Law and Human Behavior*, 23(2), 219-235.
- Studebaker C. A., & Penrod, S. D. (2005). Pretrial Publicity and Its Influence on Juror Decision Making. In N. Brewer & K. D. Williams(Eds.), *Psychology And Law: An Empirical Perspective* (pp. 254-275). New York: Guilford Press.
- Sutherland, E. H. (1940).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1-12.
- Sutherland, E. H. (1945). Is “white collar crime”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2), 132-139.
- Sutherland, E. H. (1983). *White collar crime: The uncut version*. CT: Yale University Press.
- Wong, M., Goodboy, A. K., Murtagh, M. P., Hackney, A. A., & McCutcheon, L. E. (2010). Are celebrities Charged with murder likely to be acquitted?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3(3), 625-636.
- 1 차원고접수 : 2013. 1. 13.
수정원고접수 : 2013. 2. 18.
최종게재결정 : 2013. 2. 21.

Understanding Public Figure: Punishment and Forgiveness on an Illegal Behavior

Sarang Ha

Kyonggi University

Beom Jun Kim

Min C.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eral concept of public figure and how illegal acts of public figure influence punishment and forgiveness evaluation.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defined public figure as a person with recognition and who can exert influence on other people. Also, participants perceived that public figure should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integrity, honesty and morality. In Experiment II, participants were asked to measure what type of characteristics public figure currently have and what characteristics public figures are expected to ha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a number of differences between current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they are expected to have, except recognizability and physical appearanc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on integrity, morality and following the norm, and participants perceived that public figures should have less economic power, social status, and influence on the society. Experiment III measured what types of occupations public figure would ha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ublic officials, entertainers were considered as public figures. Experiment IV evaluated punishment and forgiveness on an illegal action committed by public figure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evaluation of punishment, criticism, self-reflection between a public figure and an ordinary person.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ublic figure, illegal behavior, punitive judgement, criticism, forgiveness